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59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

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소득·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Ⅲ. 검토의견

1.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략)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10. · 11. (생략) ⑧ ~ ⑩ (생략) <u><신설></u>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5조의5제1항----- ----- ----- 10. · 11.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u>제35조의3(1인가구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자립 역</u>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센터 또는 가족센터</u>가 아니면 <u>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u>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생략)	<u>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u> 2. <u>1인가구의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u> 3. <u>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u> 4. <u>그 밖에 1인가구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④ <u>그 밖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인력의 배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5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센터, 가족센터 또는 1인가구지원센터</u>-----<u>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센터</u>-----. 제35조의5(사업수행실적 평가) (현행 제35조의4와 같음)
--	--

현행법 제3조제2호의2¹⁾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²⁾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도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³⁾하도록 하는 등 가족정책의 대상에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통계청의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로 보면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⁴⁾.

[표 1] 1인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가구(A)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21,448	21,774	22,728	22,294
1인가구(B)	5,203	5,398	5,619	5,849	6,148	6,643	7,166	7,502	7,829	8,045
1인가구비율(B/A)	27.2	27.9	28.6	29.3	30.2	31.7	33.4	34.5	35.5	36.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3)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1인가구(36.1%) 다음으로 2인가구 647만 6천 가구(29.0%), 3인가구 420만 2천 가구(18.8%), 4인가구 283만 9천 가구(12.7%), 5인 이상 가구 73만 3천 가구(3.3%) 순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의 경우 경제·안전·건강 등의 측면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9만 7천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의 81.4%에 해당하였고⁵⁾, 높은 유병율과 자살 충동 등의 특징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⁶⁾.

또한,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42.6%가 균형잡힌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7.6%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가사 어려움, 경제적 불안,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수행과 홍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⁷⁾를 규정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5)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5.

6) '24년 조사대상 기간 2주 동안의 1인가구 유병률은 38.5%로, 전체인구(29.0%)보다 9.5%p 높았으며,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1인가구 비중은 6.9%로, 전체인구보다 2.1%p 높았음[“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4), p.31~ p.33 참조].

7) [참고자료 2] 참조

[표 2] 1인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성별, 연령별)

(단위: %)

항 목	성별		연령별						전체
	남성	여성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21.9	24.1	6.3	9.2	14.8	24.5	30.2	32.7	23.3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36.0	38.5	14.4	23.9	36.6	38.8	43.7	47.3	37.6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53.0	36.3	37.3	39.3	45.2	38.3	47.4	42.9	42.6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등을 하기 어렵다	32.8	21.2	18.5	26.9	30.6	21.7	23.9	29.4	25.6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9.8	11.2	8.1	7.8	13.4	12.9	11.4	10.1	10.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7.7	11.5	6.7	9.7	11.0	8.7	13.7	8.5	10.1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15.7	15.8	5.0	6.1	13.8	16.3	20.1	20.9	15.7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12.6	11.2	3.2	4.0	13.4	21.1	15.8	9.7	11.7

주: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률의 합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주요결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공공서비스의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1인가구의 증가 추세 및 경제·안전·건강 분야에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⁸⁾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⁹⁾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2021년 10월부터 통합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고, 2025. 4.22. 「건강가정기본법」 10)에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¹¹⁾가 신설(2025.10.23. 시행)되었음.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성평등가족부는 「2014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및 건가-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 사업 안내」(2014. 3.

2025년 12월말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1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는 통합하지 않고 각각 운영되고 있음¹²⁾.

이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상 중복 해소 및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¹³⁾,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는 1인가구를 포함하여 한부모·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1인가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것인지는 센터의 기능상 중복 및 효율적 운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의 일부로, 1인가구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교류·소통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병원 동행 등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¹⁴⁾.

1.)를 통해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2021.10.13.)을 통해 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는데,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가족센터 현장에서 행정적 문제, 종사자 처우 문제, 타 기관과의 협력 시 어려움 등 가족센터의 실질적인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12) <가족센터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강센터	13	-	3	-	1	-	-	-	-	5	-	-	2	1	-	-	1	-
다가센터	19	-	4	-	1	-	2	-	-	5	-	1	2	1	-	3	-	-
가족센터	212	26	10	9	9	5	3	5	1	26	18	11	13	13	22	20	19	2
계(244)	244	26	17	9	11	5	5	5	1	36	18	12	17	15	22	24	20	2

자료: 성평등가족부

13) 2025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대상 국비 386억 7,000만원(센터당 4명~17명 인건비 포함)이 지원되고 있음.

14)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실적('25.8월 기준) : 162개 센터에서 사례관리 199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49,869명, 긴급돌봄 618건 지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 중 그 운영을 가족센터에 위탁¹⁵⁾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의 기능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대한 생애주기별·지역 여건 등에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전달체계의 중복성 우려도 있어 별도의 센터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기능에 ‘1인가구 지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기획예산처는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며, 개정안이 과도한 정부조직의 확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5) 지자체 운영 현황('25. 4월 기준) 상 총 2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26개 센터 중 7개소(서울 성동·광진·서초·강남·강동 및 경기 성남·광명)를 제외한 19개 센터는 모두 가족센터에 해당 사업을 위탁 중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1인가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실태조사 및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 인력 등 지자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자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센터 설치·운영 현황(2025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광역시	기초	센터명	센터설치 근거	센터 설립일	예산 (2025년)
서울 특별 시	종로구	종로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20.01.01.	116,900
	용산구	용산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249,900
	성동구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2022.05.02.	620,110
	광진구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14.	624,480
	동대문구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232,400
	종량구	종량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43,000
	성북구	성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17,900
	강북구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09.13.	180,850
	도봉구	도봉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10.01.	168,350
	노원구	노원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2020.01.01.	116,538
	은평구	은평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224,750
	서대문구	서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85,800
	마포구	마포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16,074
	양천구	양천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13,200
	강서구	강서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48,941
구로구	구로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60,800	

광역시	기초	센터명	센터설치 근거	센터 설립일	예산 (2025년)
	금천구	금천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62,800
	영등포구	영등포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2.01.	141,075
	동작구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57,800
	관악구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1.01.	163,150
	서초구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03.05.	837,275
	강남구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 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12.30.	468,746
	송파구	송파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05.02.	249,350
	강동구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01.01.	426,896
경기 도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광명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2022.10.13.	492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성남시 1인가구 기본조례	2023.07.18.	429

자료: 성평등가족부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10. 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3. 1인가구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5.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
6.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7. 1인가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8.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